

출석인정

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[결석](#)으로 감전하지 않고, [출석](#)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

- 공결 온라인 신청은 [온라인공결시스템](#) 문서참고
- 2021.08.01. (2021학년도 2학기부터) [백신공결](#) 신설

출석불가 인정 사유([공결사유](#))

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

1.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
2. 의무복무대체소집(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)
3.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
4. 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자매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5. 여학생의 생리
6.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
7.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)
8.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
9. COVID19 백신 접종
10.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
11.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(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)

인정 여부, 인정기간, 증빙서류

출석불가 인정사유	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	원격강의		증빙서류
		실시간화상 강의	온 라 인 녹 화 강 의	
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(의무복무 기간 제외)	해당일	녹화영상 100% 시청 시 출석인정	X	인정 관련 통지서
의무복무대체소집 (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 는 소집 절차)	해당일	녹화영상 101% 시청 시 출석인정	X	인정 관련 통지서
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	해당기간 (최대4주까지 인 정하며,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)	인정	인정	인정 공통 :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

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자매, 배우자 및 자녀 의 사망	7일 이내	인정	인 정	인 정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
여학생의 생리	해당 없음	X	X	인 정	없음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	해당 기간	인정	인 정	인 정	없음(단,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 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)
체육특기자 대회참가 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 가한 자)	해당 기간	인정	인 정	인 정	일정통보서 등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	해당 기간	인정	인 정	인 정	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COVID19 백신 접종	접종 당일	인정	인 정	인 정	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
COVID19 백신 접종 후 이 상반응이 있는 경우	접종 익일(1일)	인정	인 정	인 정	백신접종완료증명서,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 이용) 등
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 가한 자 (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 되 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)	해당기간	인정	인 정	인 정	관련 증빙서류 (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 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,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) 등)

관련문서

1. [출석](#)
2. [출석인정 내규](#)
3. [결석](#)